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요건과 연구기관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안 제4조의3)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철회 신고 서식 추가(안 제4조의4, 별지제3호, 별지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4. 28. ~ 06. 0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0.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

은 사람

1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4.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5.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등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u> <u>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 <u>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u> <u>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u> <u>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u> <u>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u> <u>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u> <u>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u> <u>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u>

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0.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4.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5.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그 임직원 등에게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제4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
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에 관한 사항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
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
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
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
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
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
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
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

<u>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 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706